

|  |          |            |
|--|----------|------------|
| <br><b>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b> | 규정번호     | 2-3-23     |
|  | 제정일자     | 2013.01.14 |
|  | 개정일자     | 2024.4.15  |
|  | 책임부서/팀·계 | 대외협력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 등을 중점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종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2024.2.28. 개정>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절차에 의해서 총장이 정한 교원을 말한다.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자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자격이 있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 산업체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3.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민간산업체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전항의 자격기준과 달리 재직 중인 교원을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직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직위는 산학협력조교수로 한다. 다만, 학력 및 경력, 사회저명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다르게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임용방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대학이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의 전공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기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014.1.3. 개정>

**제8조(재계약 및 평가)** ① <2017.02.28. 삭제>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계약은 임용기간 동안의 산학협력 실적, 대학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별지1,2,3]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계약 대상으로 한다. <2021.23.23. 개정>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의1(승진)**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한 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2024.2.28. 제정>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은 임용일로부터 4년경과 후 평가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전 조교수 기간을 산입한다. <2024.2.28. 제정>

③ <2024.4.15. 삭제>

**제9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근무일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10조(강의시간)**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책임 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제11조(휴직)**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12조(보수)**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 및 본 대학의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3조(종류), 제8조의1(승진), [별지1], [별지2]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산학협력 평가표

| 학과            |  | 직위 |     | 성명             |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 점 수 | 최대인정 점수 (600점) | 비 고                                      |
| 1. 취업         | 1) 취업 추천 후 취업 시 (취업인원당)                |    | 2   | 12             |  |
|               | 2) 외부산업체의 취업설명회 개최 (참가업체당)             |    | 1   |                |  |
|               | 3) 학생 창업 및 캡스톤 디자인 지도                  |    | 1   |                |  |
| 2. 산학협동       | 1) 기술지도, 산업체자문                         |    | 2   | 8              |  |
|               | 2) 산학협력 MOU체결 (가족회사, 현장실습협약 포함, 협약건수당) |    | 1   |                |  |
|               | 3) 산학협력위원위촉, 위원회 참여(실시건당)              |    | 1   |                |  |
| 3. 과제수행       | 1) 사업계획서 제출                            |    | 1   | 6              | 산학협력단 입금 기준으로 연구비 총액과 오버헤드 중 유용 유리한 쪽 적용 |
|               | 2) 연구비총액 500만원당                        |    | 2   |                |  |
|               | 3) 오버헤드 30만원당                          |    | 2   |                |  |
| 4. 장학금, 기자재유치 | 장학금 및 기자재유치 등 (유치금액 100만원당)            |    | 1   | 4              |  |
| 소 계           |  |    |     | 30             |  |

※ 과제수행 적용기준

2) 연구비수주 총액 500만원당, 3) 오버헤드 30만원은 산학협력단 입금기준으로 연구비 수주 총액 과 오버헤드 중 유리한 쪽 적용

[별지 2]

산학협력전담교원 재계약(학과) 평가표

|    |  |    |  |    |  |
|----|--|----|--|----|--|
| 학과 |  | 직위 |  | 성명 |  |
|----|--|----|--|----|--|

| 번호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               |               |                 |
|-----------------|-----------------|------------------|---------------|---------------|---------------|-----------------|
| 1               | 학과발전 기여도        | A(매우우수)<br>(10점) | B(우수)<br>(8점) | C(보통)<br>(6점) | D(미흡)<br>(4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2               | 강의능력 및<br>충실성   | A(매우우수)<br>(10점) | B(우수)<br>(8점) | C(보통)<br>(6점) | D(미흡)<br>(4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3               | 교수로서의<br>책무와 자세 | A(매우우수)<br>(10점) | B(우수)<br>(8점) | C(보통)<br>(6점) | D(미흡)<br>(4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b>합 계(30점)</b> |                 | <b>점</b>         |               |               |               |                 |

|      |  |
|------|--|
| 종합의견 |  |
|------|--|

20    년    월    일

학과

직위

성명

(인)

[별지 3]

산학협력중점교원 재계약(총장) 평가표

|    |  |    |  |    |  |
|----|--|----|--|----|--|
| 학과 |  | 직위 |  | 성명 |  |
|----|--|----|--|----|--|

| 번호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               |               |                 |
|-----------------|---------------------|------------------|----------------|---------------|---------------|-----------------|
|                 |                     | A(매우우수)<br>(15점) | B(우수)<br>(12점) | C(보통)<br>(8점) | D(미흡)<br>(5점) | E(매우미흡)<br>(2점) |
| 1               | 대학발전기여도             | A(매우우수)<br>(15점) | B(우수)<br>(12점) | C(보통)<br>(8점) | D(미흡)<br>(5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2               | 교수의 자질 및<br>능력      | A(매우우수)<br>(15점) | B(우수)<br>(12점) | C(보통)<br>(8점) | D(미흡)<br>(5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3               | 신입생 유치 및<br>학생 지도능력 | A(매우우수)<br>(10점) | B(우수)<br>(8점)  | C(보통)<br>(6점) | D(미흡)<br>(4점) | E(매우미흡)<br>(2점) |
|                 |                     |                  |                |               |               |                 |
| <b>합 계(40점)</b> |                     | <b>점</b>         |                |               |               |                 |

|      |  |
|------|--|
| 종합의견 |  |
|------|--|

20   년   월   일

직위   총장

성명

(인)

### 항목별 세부 평정기준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별지2]<br>(학과)<br>평가표 | 학과발전기여도          | 학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발전기여도(취업, 총원)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 A(매우우수) 10점<br>B(우수) 8점<br>C(보통) 6점<br>D(미흡) 4점<br>E(매우미흡) 2점  |
|                      | 강의능력 및 충실성       | 강의 능력 및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 A(매우우수) 10점<br>B(우수) 8점<br>C(보통) 6점<br>D(미흡) 4점<br>E(매우미흡) 2점  |
|                      | 교수로서의 책무와 자세     |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대학 내의 제반규칙 및 학사행정 업무 준수에 대한 평가 | A(매우우수) 10점<br>B(우수) 8점<br>C(보통) 6점<br>D(미흡) 4점<br>E(매우미흡) 2점  |
| [별지3]<br>(총장)<br>평가표 | 대학발전기여도          | 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발전 기여도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 A(매우우수) 15점<br>B(우수) 12점<br>C(보통) 8점<br>D(미흡) 5점<br>E(매우미흡) 2점 |
|                      | 교수의 자질 및 능력      | 교수로서의 강의 능력과 교수들간의 인화 관계 등에 대한 평가            | A(매우우수) 15점<br>B(우수) 12점<br>C(보통) 8점<br>D(미흡) 5점<br>E(매우미흡) 2점 |
|                      | 신입생 유치 및 학생 지도능력 | 학과 신입생/재학생 총원을 및 학생 지도 능력 평가                 | A(매우우수) 10점<br>B(우수) 8점<br>C(보통) 6점<br>D(미흡) 4점<br>E(매우미흡) 2점  |